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1374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5.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C는 2008. 10. 4. 주식회사 D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C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14. 10. 21.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759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1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6,751,923원 및 그 중 4,524,93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22. 9. 2. 현재를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7,182,642원 및 그 중 4,524,930원에 대하여 202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C는 2022. 4. 24. 사망한 모(母)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고, F, G, H(모두 각 1/5 지분)과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6. 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6. 2.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인데, 망인이 2022. 4. 24.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은 2022.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망인이 사망한 '2022.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2. 5. 23.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I, J, K, L, M에 대한 대출금으로 원금 합계 35,069,93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N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으로서 6,751,923원 및 그 중 원금 4,524,93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갖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장남 겸 피고의 형인 F가 망인 명의로 임의경매를 받아 망인 및 피고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부동산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소유인데, 망인이 2022. 4. 24. 사망한 후 F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가정 형편이 가장 어려운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C의 상속포기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C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도 없었으며, 피고는 C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선의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F의 소유로서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C는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1/5 지분을 포기하였던 것인데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만한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리고 C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채무자인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있기 이전인 2010.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연체하여 오던 중이었던 반면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의 형제로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단독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와 C 사이에 그 상속재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

부동산 목록

1. 대구광역시 달서구 O 대 94.5㎡

2. 대구광역시 달서구 O 제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P

세멘부록조 옥집 평가건주택

건평 15평7홉5작

세멘부록조 옥집 평가건물치장 건평 7홉5작 끝.

